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939호 2023. 11. 29.(수)

거창후흐거창

선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815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거창군 조례 제2816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6
거창군 조례 제2817호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거창군 조례 제2818호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거창군 조례 제2819호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22
거창군 조례 제2820호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 26
거창군 조례 제2821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거창군 조례 제2822호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37
거창군 조례 제2823호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0
거창군 조례 제2824호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44
거창군 조례 제2825호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53
거창군 조례 제2826호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9
거창군 조례 제2827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62
거창군 조례 제2828호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68
거창군 조례 제2829호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71
거창군 조례 제2830호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73
거창군 조례 제2831호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 77
거창군 조례 제2832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82
거창군 조례 제2833호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5
거창군 조례 제2834호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 88
거창군 조례 제2835호 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95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377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98
거창군 규칙 제1378호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07
거창군 규칙 제1379호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15
거창군 규칙 제1380호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19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74호 거창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126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146호 도로명주소 고시 ····· 128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1713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 129
거창군 공고 제2023-1717호 거창군 군유임산물(입목) 매각 입찰 공고 ····· 138
거창군 공고 제2023-1721호 군도 2호선(주상 도평) 굴곡도로 개량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 150
거창군 공고 제2023-1722호 거창군 (주)성보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 · 154
거창군 공고 제2023-1731호 가북 심방(3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 156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15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이하 “재정안정화 계정”이라 한다)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③ (생 략)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해야 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해당 금액의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채무부담 사업비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이하 “재정안정화 계정”이라 한다)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해야 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해당 금액의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채무부담 사업비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27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국세·지방세 수입 저조 등 어려운 세입 여건과 재난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확대함(안 제4조)

1)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 90퍼센트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9.~10.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16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 활용범위 확대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 강화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제9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제10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의 심의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7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 활용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청년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신 설>	**제8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신 설>	**제9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신 설>	**제10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28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사항을 정함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기능 및 대행을 신설함(안 제7조)

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신설함(안 제8조)

라.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이전 시 지원범위를 신설함(안 제9조)

마.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를 신설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제15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7. 28.~8.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17호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1조”를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3조·제6조·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서면심의를 포함한다)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1. 민원소통과장, 도시건축과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 및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의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서면심의를 포함한다)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29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나. 법령 위임범위에서 위원회의 위원 수 등을 정비함(안 제3조·제6조·제10조)

1) 위원 수: 7명 이내 ⇒ 10명 이내

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지명업무 담당과장

3) 신설: 서면심의, 수당

다. 법령 중복·재기재사항 삭제함(현행 제10조·제11조)

1) 보고, 현장조사 등

2)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9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5.~9.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18호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업무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회가 등록금 지원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금 지원 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업무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회가 등록금 지원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금 지원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30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한국승강기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등록금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인 거창군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21.~10.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19호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거창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거창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2. “지역업체”란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및 지역 먹을거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매촉진) ① 거창군수(이하 “군”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 구매 목표 비율은 군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5조(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는 지방보조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협조 안내
2. 지역업체 정보
3. 지역상품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군에서 물품·용역·서비스 등의 제조·구매,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사에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표창)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거창 내 공공기관· 공무원 등에 대해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97

발의일자	2023. 10. 11.
발 의 자	박수자, 이홍희,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거창군의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지역에서 생산된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구매촉진 및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다. 합　　의: 경제기업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10.~10. 16.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20호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우리말 사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공기관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통해 거창의 우리말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에 따른 우리말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

다)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거창군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과 거창 지역어의 보전 등 우리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은 우리말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조례보다 우선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2.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우리말로 작성해야 한다.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을 금지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이 명칭, 정책명, 사업명, 장소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를 준수해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제5조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우리말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제8조(실태 조사) ①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한글 작성 및 우리말 사용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위해 문화관광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임명해 우리말 진흥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연 1회 이상 공공기관 및 옥외광고물 사업자의 한글 사용 장려를 위한 어문규범 보급과 우리말 사용 협조 요청
3. 공공기관 공무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우리말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거창 주민들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6. 그 밖에 군수가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김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98

발의일자	2023. 10. 11.
발 의 자	김혜숙,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1. 제안 이유

거창에는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가 있음에도 ‘어싱길’, ‘항노화힐링랜드’, ‘승강기 베스트 밸리’ 등 무분별한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어 조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거창군이 「국어기본법」에서 규정된 책무를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나. 한자어인 국어를 우리말로 변경

다. 불필요한 조항 삭제(종전 안 제2조, 제5조, 제13조)

라. 공문서 작성, 공공기관 등의 명칭, 광고물 등에 우리말 사용(안 제5조~제7조)

마. 실태조사(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국어기본법」 제4조·제10조·제14조·제21조·제22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다. 합　　의: 문화관광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10.~10. 16.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21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자에게 효도권 이용자가 이용한 비용을 매월 지급한다.
④ 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나목 중 “월 10만원”을 “월 15만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를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으로 한다.

제13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지급대장”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효도권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로서 85세 이상인 사람(이하 “효도권 이용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목욕 및 이용·미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효도권 이용자는 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미용업소(이하 “효도권 지원사업자”라 한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효도권 지원사업자는 효도권 이용자가 그달 이용한 효도권 이용명부를 근거로 효도권 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효도권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1. 효도권 이용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효도권 이용명부의 허위작성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권을 이용하거나 효도권 비용을 지원 신청한 경우	**제7조의2(효도권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로서 85세 이상인 사람(이하 “효도권 이용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목욕 및 이용·미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효도권 이용자는 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미용업소(이하 “효도권 지원사업자”라 한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자에게 효도권 이용자가 이용한 비용을 매월 지급한다. ④ 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나.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월 10만원)** 다.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 2. 사망위로금: 50만원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나.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월 15만원)** 다.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 2. 사망위로금: 50만원
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현 행	개 정 안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사람은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명예수당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삭 제>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1) 국가유공자 효도권 지원

2)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지급

나. 관련 조문: 안 제7조의2, 제10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계	168	192	192	192	192	936
군비	157.8	181.8	181.8	181.8	181.8	885
도비	10.2	10.2	10.2	10.2	10.2	51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효도권 지원: 7,000원×600명×3매×12월 = 151.2백만원

나.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200,000원×17명×12개월 = 40.8백만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31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효도권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도권 지원사업자에 대한 비용의 지급방법 변경함(안 제7조의2)

나. 효도권 지원사업의 위탁근거 신설함(안 제7조의2)

다.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을 인상함(안 제10조)

1) 현행: 월 10만원

2) 변경: 월 15만원

라.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의2제4항·제15조)

마. 별지 서식을 삭제함(안 제11조·제13조, 별지 제1호~제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2)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191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5.~10.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22호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3조에 따른 대상 시신에 대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거나 장례진행 후에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영장례 대상)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공영장례(군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장례비용 지원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영장례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공영장례를 신청하려는 군민 또는 군 소재 법인은 공영장례 신청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영장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물품환수)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품으로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받은 물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공영장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3-132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군에서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거나 장례진행 후에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공영장례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공영장례 대상, 지원내용을 정함(안 제3조·제4조)

1) 대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2) 내용: 현금지급 원칙, 물품 예외지급, 매장비용은 제외

라. 공영장례 신청, 물품환수, 위탁을 정함(안 제5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법」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9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9.~10.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23호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9조,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연회비 납부 및 반환)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매년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회원 등록을 취소한 경우 2.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난감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난감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연회비의 반환기준 및 절차 등은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연회비의 면제) 군수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6.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구성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33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회비 제도를 폐지하여 장난감은행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아이키우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거창군 출산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회비 폐지 관련 삭제함(안 제8조·제9조)

1) 연회비 납부 및 반환

2) 연회비 면제

나. 법령 재기재 삭제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2) 「아동복지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5.~10.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24호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1. 아동은 해당 아동 또는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등에 무관하게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교육, 의료, 문화 및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사법절차에서 아동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존중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아동을 포함한 군민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아동 의견 반영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3.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
   나.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사업
   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
4.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사업
5.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등 조성) 군수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
2. 아동의 놀이 및 휴식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유기적 연계

제8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실시)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내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조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6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아동권리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및 그 제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아동 분야의 전문가
   다. 아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라. 군민인 아동의 부 또는 모
   마.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아동권리 대변인의 설치)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아동권리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20조(아동권리 대변인의 기능) 아동권리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 권리에 관한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
3. 아동 권리 침해 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아동권리 대변인을 위촉할 수 있다.

1. 아동 권리 분야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아동권리 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대변인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아동권리 대변인의 해촉) 군수는 아동권리 대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 대변인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권리 대변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권리 대변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24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수립하는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군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아동영향평가 실시 제외) 군수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 및 단순 업무처리절차 등 조직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군수가 해당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 시행 등

나. 관련조문: 재정지원(안 제9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합계
군비	50	10	10	10	50	130

3. 향후 계획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사업 추진을 위한 2026년 본예산 편성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2026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50백만원
2. 2027년~202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사업 추진 등 30백만원
3. 2030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연구용역 및 기반사업 추진 50백만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신 동 범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3-134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거창군의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정함(안 제1조~제4조)

나. 기본계획, 사업, 아동권리 실태조사, 재정지원 등을 정함(안 제5조~제9조)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8조)

라. 아동권리 대변인 설치·기능 등을 정함(안 제19조~제23조)

마. 아동동영향평가 실시, 실시 제외를 정함(안 제24조·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2)「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아동복지법」제4조

나. 예산조치: 2026년부터 예산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7. 27.~8.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8조)

5)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25호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조 제목 “(기능)”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능) <신 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

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 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36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근거 등 정비(안 제2조)

나. 위원회 비상설화함(안 제3조제5항)

다.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정비

1) 변경: 회의안건 부치는 권한 및 회의소집 권한(안 제2조·제7조)

2) 삭제: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 임기(현행 제4조·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2)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8. 16.~9.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26호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책임)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군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책임)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군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37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구호 및 복구비 등을 지원한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거창군이 부담한 구호 및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원인제공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책임을 정함(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8.~10.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27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제1조의2제3항”을 “제1조의2제3항제1호”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임산부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차 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공영주차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나. 취사·음주·흡연, 폐기물 투기를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무단 장기주차하는 경우
5. 주차요금을 3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을 "영 제1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 략) ② (생 략)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3(임산부 전용주차구역)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이하 "임산부"라 한다)이 운전할 경우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조의3(임산부 전용주차구역)**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이하 "임산부"라 한다)이 운전할 경우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임산부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 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4조(주차 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공영주차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나. 취사·음주·흡연, 폐기물 투기를 하

	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무단 장기주차하는 경우 5. 주차요금을 3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조치할 수 있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2. (생 략)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 략)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2. (생 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 략) ③ (생 략)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는 영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납부일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②~④ (생 략)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는 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납부일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38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공영주차장 내의 장기불법주차, 주차구역에서 상행위·야영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령 범위에서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거부 사유 확대함(안 제4조)

1)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2) 취사·음주·흡연, 폐기물 투기를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무단 장기주차하는 경우

4) 주차요금을 3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등

나.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사항 변경 등 정비(안 제2조의2·제2조의3·제15조·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주차장법」 제8조·제8조의2·제10조·제13조·제15조·제17조

2)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5.~10.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28호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보관 비용) ① 거창군수는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견인·보관 비용(제2조 관련)

1. 견인비용

대상차량	견인료
	기본요금(편도 10킬로미터 까지)
2.5톤미만	72,200원
2.5톤이상~4톤미만	100,300원
4톤이상~8톤이상	128,000원
8.0톤이상~12톤이상	154,400원
12톤이상	174,500원

2. 보관비용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39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비용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별표)

1)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의 산정기준

나. 「도로교통법령」재기재 또는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조항 삭제함 (현행 제2조·제4조·제5조)

1) 차량의 견인: 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2)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3) 대행비용의 지급: 법 제35조제6항, 시행령 제15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5.~10.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29호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의안 번호	2023-140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2005 2. 25.)하였으나, 법령 개정(2014. 1. 17.)으로 군수가 고시할 수 있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20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5.~10.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30호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거창군민
2. 예방접종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를 말한다)이나 제5조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보건기관 등은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5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군수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65세 이상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나. 관련조문: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군비	735,600	772,380	810,990	851,539	894,115

3. 관련의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에 대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지원대상: 65세 이상 군민

나. 사업비: 735,600천원

1) 백신구입비: 731,600천원(100,000x7,316명)

2) 이상반응 지원비: 4,000천원

작성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3-135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에 대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정함(안 제2조)

나. 예방접종 비용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3조)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군민으로서 예방접종 금기자가 아니면서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등

다. 지원신청을 정함(안 제4조)

라.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5조)

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를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제17조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735,600천원 확보예정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1.~10. 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31호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 지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지정스포츠클럽 우선 수의계약 등) ① 군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별표 지원분야란 중 장애인활동 지원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경비 지원대상 사업(제8조제3항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지정스포츠클럽 지원	○ 운영비 ○ 수준별·종목별 지정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3.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 8. 전문체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신 설> ③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3.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 8. 전문체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10.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 지원 ③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지정스포츠클럽 우선 수의계약 등)** ① 군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1) 지정스포츠클럽 지원: 운영비, 수준별·종목별 지정스포츠 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나. 관련 조문: 안 제8조·별표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세출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군비	145,000	145,000	145,000	145,000	145,000	725,000

3. 관련 의견: 지정스포츠클럽의 예산 지원으로 군민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군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지정스포츠클럽 1곳

2. 2023년 운영비 = 145,000원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41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 2022. 6. 16.)되어「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제정된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지정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창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스포츠클럽 지원을 신설함(안 제8조·별표)

나. 지정스포츠클럽 우선 수의계약 등 신설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스포츠클럽법」 제13조·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2) 「지방자치법」 제28조

다. 예산조치: 2023년 예산 145,000천원 확보

라.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마.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7. 14~8. 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32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스포츠클럽: 100분의 8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5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사용료 감경)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사용료 감경)**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②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스포츠클럽: 100분의 8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50
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42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2022. 6. 16.)되면서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여 군의 스포츠클럽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함(안 제15조)

1) 근거: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가) 지정스포츠클럽: 100분의 80

나)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5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스포츠클럽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3.~5.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33호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결산검사위원”을 “거창군 결산검사위원”으로 “4명”을 “5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거창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의 정수) 거창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거창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최준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94

발의일자	2023. 10. 11.
발 의 자	최준규,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보다 면밀하고 원활하게 결산검사 하기 위해 거창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정수 조정(안 제2조)

1) 4명 ⇒ 5명

나. 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다. 합　　의: 재무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10.~10. 16.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34호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겸직없음 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등과 겸직 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겸직 없음 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등과 겸직 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1의2서식]

거창군의회 의원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의회 의원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95

발의일자	2023. 10. 11.
발 의 자	신미정,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3. 8. 30. 공포·시행)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나.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 가능한 선물의 범위 등을 확대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43조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10.~10. 16.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835호

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장과 거창군수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거창군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서류를 요구하거나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서류”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성·보유하고 있는 서류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서류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군수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원서류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군수는 서류제출 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서류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96

발의일자	2023. 10. 11.
발 의 자	김홍섭, 이홍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신미정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등에서 규정된 서류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서류제출 요구 방법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다. 서류의 제출 방법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라. 원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정함(안 제6조)

마. 서류 제출 기간 등에 대해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10.~10. 16.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377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효도권 지원방법 등) ① 조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효도권 지원은 효도권 바우처카드(효도권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급한다.

② 거창군수는 거창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미용업소의 효도권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제3조 조 제목 “(효도권 및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비용청구)”를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비용청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조례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효도권 및”을 “조례 제7조의3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표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효도권 및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기준(제2조 관련)

1. 효도권

(단위: 원)

구분	1분기/1명당	2분기/1명당	3분기/1명당	4분기/1명당
지원 금액	63,000	63,000	63,000	63,000
지급 시기	1월 5일까지	4월 5일까지	7월 5일까지	10월 5일까지

1.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음
2. 지원하는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
3.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조의2(효도권 지원방법 등) ① 조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효도권 지원은 효도권 바우처카드(효도권 지원 비용을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급한다. ② 거창군수는 거창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미용업소의 효도권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제3조(효도권 및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비용청구) 조례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효도권 및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비용청구는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3조(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비용청구) 조례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비용청구는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 설>	제4조(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table>
<tr><td colspan="5">명예수당 지급신청서</td><td>처리기간
7일</td></tr>
<tr><td rowspan="4">신청인</td><td>성 명</td><td></td><td>지급대상유형</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 colspan="2">남/여</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예금계좌</td><td>금융기관명</td><td></td><td>예 금 종 류</td><td colspan="2"></td></tr>
<tr><td>계좌 번호</td><td></td><td>예금주 성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5">※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td><td>수 수 료
없 음</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뒷 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기본(필수) 동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의 자격확인과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

○ 성명, 주소, 보훈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한 후 폐기처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지원신청서 접수·등록 불가.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동의 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td><td>처리기간
7일</td></tr>
<tr><td rowspan="3">참 전
유공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td><td>성별</td><td colspan="2">남/여</td></tr>
<tr><td>사망 일자</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성별</td><td>남/여</td></tr>
<tr><td>주 소</td><td colspan="4">(전화번호:)</td></tr>
<tr><td>참전유공자
와의 관계</td><td></td><td>지급기관
(예금계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6">※ 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td><td>수 수 료
없 음</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뒷 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기본(필수) 동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의 자격확인과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

○ 성명, 주소, 보훈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한 후 폐기처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지원신청서 접수·등록 불가.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동의 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일시	지급대상자			신 청 인					지급내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3-80

제출일자	2023. 10. 11.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 이유

조례 개정으로 효도권 지원사업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그 지급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도권 지원방법 등을 변경함(안 제2조의2)

1) 지급방법: 효도권 바우처 카드

2) 협약업소 매출대금 지급시기: 매월 말일

나. 별지 서식 신설 및 그에 따른 문장 정비(안 제4조,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191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5.~10.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별지 서식에 성별항목 신설)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378호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신(이하 “무연고시신등”이라 한다)에 대해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무연고시신등의 장례비용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등

제3조(공영장례 신청 등) ① 공영장례를 신청하려는 거창군민 또는 거창군 소재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시신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신 처리 위임서를 군수에게 체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영장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거창군 공영장례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장례의식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거창군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비용 지원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6">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td><td>처리기간
2일</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
(상호)</td><td></td><td>생년월일
(사업자번호)</td><td></td><td>사망자와의
관 계</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전화번호</td><td></td><td>휴대전화</td><td></td><td>장례일자</td><td></td></tr>
<tr><td rowspan="3">사망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성 별</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사 망 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d>사 망
원 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장례
수행자</td><td>성 명
(상호)</td><td></td><td>생년월일
(사업자번호)</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장례일자</td><td colspan="2"></td><td>장례방법</td><td colspan="2"></td></tr>
<tr><td>지급계좌</td><td>금 융
기 관 명</td><td></td><td>예 금 주</td><td></td><td>계좌
번호</td><td></td></tr>
<tr><td colspan="7">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td></tr>
<tr><td>구비서류</td><td colspan="5">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td><td>**수수료**
없 음</td></tr>
<tr><td colspan="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시신 처리 위임서

사 망 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 적			
위 임 자 (연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주 소			
	국 적			
위 임 사 유				
위 임 내 용		시신의 처리(화장·봉안 등)		
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결정내역	선 정 사 유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수행자			
	지원 한도액	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액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시신등에 대한 장례지원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관인)

[별지 제4호서식]

거창군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인
(대행
기관)</td><td>성 명
(상호)</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사업자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2"></td><td>사망자와의
관계</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망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성별)</td><td colspan="2">(남/여)</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장례추진
결 과</td><td>장례처리</td><td colspan="6">◦ 공영장례일자:
◦ 안치장소:</td></tr>
<tr><td rowspan="2">집 행 액
(원)</td><td colspan="2">계</td><td colspan="2">장례비용</td><td colspan="2">그 밖의 비용</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청구금액</td><td colspan="6">금 원</td></tr>
<tr><td>지급계좌</td><td>금융기관명</td><td></td><td>예금주</td><td></td><td>계좌
번호</td><td></td></tr>
</table>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명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

무연고 시신 등 장례처리 사진자료

구분	사진
전신	
염습 (수의 착용)	
입관 (관 속 안치)	
빈소(제례실)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23-82

제출일자	2023. 10. 11.
제 출 자	행복나눔과장

1. 제안 이유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서식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장례 장례비용 지원내용 등을 정함(안 제2조)

1) 지원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퍼센트 이내, 필요시 추가

2) 지원범위: 수의·관·유골함 등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등

나. 공영장례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9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21.~10.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379호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제3조(지원기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부
2. 제1호 외의 지원대상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예방접종 시행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 소재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건기관

2. 제1호 외의 지원대상자: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할 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5조(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별지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거창군- 호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귀 기관을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상포진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직인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23-91

제출일자	2023. 10. 11.
제 출 자	보건정책과장

1. 제안 이유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등을 정함(안 제4조)

라. 예방접종 기록 관리,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발급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29조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735,600천원 확보예정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1.~10. 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380호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등) 자율방범대 및 거창군 자율방범연합대가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5.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지원금 신청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1. 사 업 명:

2.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 원)

구분	항목	계	신청금	산출기초
계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연합대 활동경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별지 제2호서식]

(　　) 지원금 정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예산과목					수령액	집행액	잔액	이자 수입
정책	단위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　　세부 집행내역]

(단위: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

20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table>
<tr><td rowspan="2">제000호</td><td rowspan="2">결재</td><td>담당자</td><td>총무</td><td>대장</td></tr>
<tr><td></td><td></td><td></td></tr>
<tr><td>지출과목
(비목)</td><td colspan="2">매식비 / 소모품 구입비 /
피복비 등</td><td>지출일</td><td>20 . . .</td></tr>
<tr><td>지출금액</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지 출 내 용</td></tr>
<tr><td>사용처</td><td colspan="2"></td><td>지출방법</td><td></td></tr>
<tr><td colspan="5">◦ 건명:

◦ 일자: 20 . . .(요일)

◦ 채주:

◦ 금액: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붙임: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td></tr>
</table>

[별지 제4호서식]

조장	방범대장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20 년 월

순찰 일시	순찰 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비고
		성명	남/여	서명		
월 일 (○요일) 00:00 ~ 00:00	00명					

20 년 월 일

확인관: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20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20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20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2000.00.00.(0요일) 00:00~00:00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23-99

제출연월일	2023. 11. 6.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을 정함(안 제2조)

1)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3) 별지 제3호서식: 지출결의서

4) 별지 제4호서식: 방범일지

5) 별지 제5호서식: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2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10.~10.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별지 4호서식에 성별란 추가)

거창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훈령 제474호

거창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거창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거창군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범위) 거창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 활동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
2.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지역 특산물 홍보 등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5.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이나 단체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제4조(임기)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 시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7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용 등 구체적인 활동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7조(품위유지) 홍보대사는 군정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고시 제2023 - 14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29.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276-6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공고 제2023-1713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3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거창군수 (직인)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손항천	손항소하천정비공사	고제면 농산리 1400-3	고제면 농산리 1135	751	375.5	교량 1개소	2023. 11.	2024. 12.	치수관리 재해예방	-
		이		하		여		백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거창군>

(2023년)

수계(水系)명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소하천 총길이(m)	유역(流域) 면적(㎢)	계획 하천 폭(m)	정비 계획															
						전체			정비된 부분			이번 시행							장래 계획		
						사업량(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m)		사업비(백만원)	위치		사업량(m)		사업비(백만원)	사업효과			사업량(m)		사업비(백만원)
						축제(築堤)	호안(護岸)		축제	호안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호안		농경지(ha)	건물(동)	수질(ppm)	축제	호안	
낙동강	47	손항천	1,892	3.26	3.0 ~ 38.0	2.522 (양안)	1,261	1,515	-	-	-	고제면 농산리 1400-3	고제면 농산리 1135	715 (양안)	375.5	1,200	0.42	1	-	1,807 (양안)	885.5	315

세부정비 시행계획

1. 소하천정비공사의 명칭 : 손항소하천 정비공사

2. 소하천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소하천정비공사의 목적

○ 재해에 강한 친수형 소하천 정비로 재해예방 증대와 하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소하천정비공사의 개요

1) 위　　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일원
2) 사 업 량 : 하천정비 L=751m
3) 사 업 비 : 1,200백만원

3. 소하천정비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4. 소하천정비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2023. 11. ~ 2024. 1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

○ 15. 편입용지조서 참조

6. 준공된 소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거창군수(건설교통과장)

7.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 해당없음

8. 실시설계도서 : 거창군청 건설교통과(하천담당) 비치

9. 예정 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예 정 공 정 표

기간 / 공종	비율(%)	예정공정표(365일)									비고
		착공120일			착공240일			착공365일			
	100.0%	40일	80일	120일	160일	200일	240일	280일	320일	365일	
토 공	21.3%	2.4	2.4	2.4	2.4	2.4	2.4	2.3	2.3	2.3	
호안공	54.2%		10.9	10.9	10.8	10.8	10.8				
우수공	0.3%			0.2	0.1						
하천시설물공	2.5%			0.9	0.8	0.8					
교량공	12.5%				4.2	4.2	4.1				
포장공	0.4%						0.2	0.2			
부대공	8.8%						2.2	2.2	2.2	2.2	
누 계	당 월	2.4	13.3	14.4	18.3	18.2	19.7	4.7	4.5	4.5	
	누 계	2.4	15.7	30.1	48.4	66.6	86.3	91.0	95.5	100.0	

10.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

(금액 : 백만원)

사업명	사 업 비						비고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손항소하천 정비공사	1,200	-	200	359	641	-	군비(전환) 50% 군비 50%

11. 사업인정신청 사유 : 소하천정비사업(소하천 정비법 제8조 및 제12조)

12.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소하천정비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 거창군수 : 「소하천정비법」제10조의2에 따른 의제사항 협의

- 군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별첨)
- 농지전용, 산지전용 협의 등

13. 소하천정비공사 편입토지 및 물조서 열람 안내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사항

○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14. 편입용지조서(손항소하천 정비공사)

○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78,414**	**5,493**					
소계	-	-	-	**178,414**	**5,493**					
1	고제면 농산리	1400-6	답	132.0	132.0	-	거창군			
2	"	1389	구	40.0	40.0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272	김*옥			
3	"	1387-1	답	1,073.0	228.0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432	이*종			
4	"	1151	답	2,063.0	154.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4-21	경*현			
5	"	1152	답	916.0	42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64-22	양*동			
6	"	1154-15	답	61.0	61.0	-	거창군			
7	"	1154-16	답	128.0	128.0	-	거창군			
8	"	1154-17	답	438.0	438.0	-	거창군			
9	"	1156-6	도로	26.0	26.0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164	김*련			
10	"	산196-1	임	23,196	94.0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온곡길 34-14	강*길 외 3인			
11	"	1143	전	1,322.0	570.0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161	이*생			
12	"	1135	임	205.0	205.0	-	거창군			
13	"	1848	천	142,061.0	2,698.0	-	국(환경부)			
14	"	1394-1	도	152	124	-	거창군			
15	"	1918	도	1,765	2	-	국(건설부)			
16		1388-1	도	43.0	27.0	-	거창군			
17	"	1917	구	2,694.0	26.0	-	국(농림수산부)			
18	"	1156-9	도	102.0	19.0	-	거창군			
19	"	1910	도	1,812.0	89	-	국(건설부)			
20	"	1157-2	도	139.0	6.0	-	거창군			
21	"	1167-1	도	46.0	5.0	-	거창군			

○ 영농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소계	**-**	**-**	**-**	**5,374**	**1,373**					
1	고제면 농산리	1387-1	답	1,073.0	228.0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방학길 60	진*섭			
2	"	1151	답	2,063.0	154.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4-21, 103동 804호(대우아파트)	경*현			
3	"	1152	답	916.0	42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64-22 (303호)	양*동			
4	"	1143	답	1,322.0	570.0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1413-41	오*순			

○ 물건조서

연번	위치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단 위	수량	비고
	시·군	읍·면	리	지 번					
1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151	사과나무	R15~20*H1.5~2.5(약10~15년생) 관수라인/지주목/지주선/기타시설일체포함	주	73	-
					울타리	철제 휀스형(90*1.5)	㎡	135	-
2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848	호두나무	R20~25*H2~3(약15년~20년생)	주	2	-
3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143	사과나무	R10~15*H1.~2(약7~10년생)	주	69	
					제피나무	R15~25(약10년~20년생)	주	3	-
					전기시설	농업용 1식	식	1	-

15.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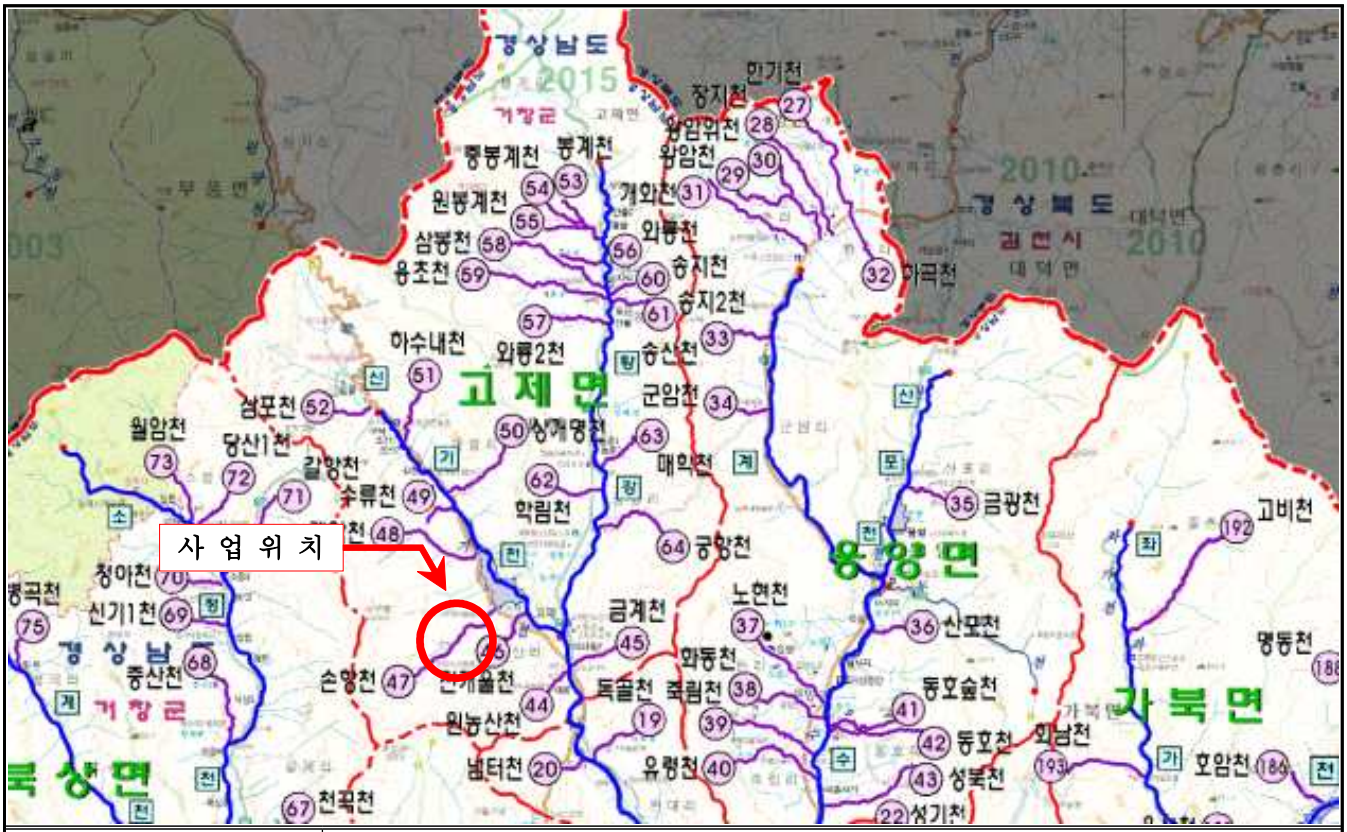

소하천명	손항 소하천

위 치	경남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일원

16. 기타사항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40-36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3-1717호

거창군 군유임산물(입목) 매각 입찰 공고

군유림 내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의 매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거 창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거창군 군유임산물(입목) 매각

나. 산물소재지 및 수량 등

산물소재지	면적(ha)	수종	수 량		예정가격(원)	벌채·반출기한(물건인도일로부터)
			본수	생산재적(㎥)		
합 계	19.0		19,618	2,790.77	62,459,570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산247, 산247-2 (1임반 1소반, 2임반 1소반)	19.0	소나무	1,425	584.99	29,424,997	인도일로부터 2024.2.23.까지
		낙엽송	1,520	792.98	23,710,102	
		기타활엽수	16,673	1,412.80	9,324,480	

※ 표준지조사에 의하여 산출된 수량이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 유의사항

1) 입찰자는 벌채구역도, 운재로 예정노선, 현지 물건 및 반출 여건 등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생산수량은 표준지 조사 및 조재율에 의해 산정되었으므로 수종별 제재목

및 생산량(재적) 상이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3) 매수자는 사업 시행 전 반드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 신고를 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임산물 반출에 필요한 운재로는 예정노선에 따라 매수자가 개설하여야 하며 예성노선은 거창군(산림과)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거창군(산림과)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유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매수자가 협의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산물반출로 인하여 산림 및 주변 농경지, 민가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및 민원 발생 시 매수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6) 벌채구역 내 수림대가 분포하므로 경계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경계를 침범하여 벌채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7) 입찰 후 낙찰 물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055-940-3463)

3.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 거창군**이어야 합니다.

다. "온비드"에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시스템에서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개인, 일반 또는 법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제재 중에는 대리인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및 [별표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5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 실적이 있는 자의 경우 : 벌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자격증 사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경우 :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임업 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 : 원목생산업등록증 사본

바. 입찰에 참여하는 응찰자는 현지확인 확약서(붙임2)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거창군 산림과 산림조성담당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응찰자 제출서류

가. 2023년 12월 1일(금) 16:00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바랍니다.
(당일 도착분까지 한하여 유효함)

나.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산림과(우 50132)

다. 팩스 : 055-940-3459

(단, 팩스로 제출된 서류는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팩스로 송부한 서류와 원본이 상이한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차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팩스 제출 시 입목매각 담당자와 수신 상황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찰자가 제출서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됨.

5. 입찰 및 낙찰자 선정(개찰) 일정

가. 입찰서 접수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23. 11. 24.(금) 16:00 ~ 12. 1.(금) 16:00

나.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다. 개찰일시 : 2023. 12. 4.(월) 10:00

라. 개찰장소 : 거창군 입찰집행관 PC(※ PC사정 등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음)

6.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동일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은 고지서로써 통보되는 기한 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거창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무효 처리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상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분할납부 불가)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와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금액을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10. 전자입찰 참가 준비 등의 책임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개인)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운용담당자(1588-5321)**에게 문의하시고,

나. 은행시스템 피크(Peak)시간대의 경우, 은행(온비드 지정 은행계정)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 및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께서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의 ‘가항’ 및 ‘나항’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제반사항 미비로 낙찰 제한 및 불이익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구축한 온비드를 활용하는 입찰입니다.

마. 본 입목 매각 지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인가 지역으로 **2024년 조림사업 대상지로서 벌채지 정리 작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벌채산물 전량 수집(지조물 포함)**

바. 생산재 반출에 따른 운재로는 입목 매수자가 직접 개설·보수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매수 산물의 벌채 및 반출 시 주변 입목 및 시설을 파손·훼손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사유지 통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아. 응찰자는 거창군 산림과에 비치되어 있는 계약서(안), 재적조서, 도면을 열람하시고 현지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입찰 등록을 마친 자는 매각 물건의 제반사항을 열람·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낙찰자에게 취득제한이나 행정·법령상 규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우리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차. 벌채 구역 내 나무의 가슴 높이 부분에 노란색 페인트 표시목은 「산림청 친환경 벌채 운용 요령」에 다른 존치목으로 벌채 제외목입니다.

카. 매수산물 중 소나무는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운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매수자가 져야 합니다.

타.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1) **매각내용 및 현장 정보에 관한 문의사항**

- 문 의 처 : 055-940-3463(거창군 산림과)

2)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 문 의 처 : 055-940-3263(거창군 재무과)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입찰방법(입찰자)문의처 : 1588-5321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리군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유임산물 매각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계약명 : 군유임산물 매각 계약

○ 개소 : , 지목 : , 면적 : ㎡, 목적 :

《계약자(신청자)》

1. 본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법행위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계약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담당공무원》

1. 우리군에서는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군 관계 공무원은 귀하(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계약자(신청자)
성 명 : (인)

담당공무원 거창군 산림과
직 : 성명 : (인)

거 창 군 수 귀하

[붙임 2]

현지확인 등 확약서

입찰(계약)건명 : 군유임산물(생산재) 매각 공고

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공고로 게시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안), 일반매각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재적조서 열람 및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계약체결 이후 상기 제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으나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 약 자: (인)

담당공무원 : (인)

거 창 군 수 귀하

[붙임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12.24.>

군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1쪽)

임산물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목	경영계획구	임반·소반
반출(벌채)기간	인도일부터 개월 이내				
채취(벌채)면적	㎡				

임산물 종류	수량				용도
	본수(본)	입목재적(㎥)	조재(제탄)율(%)	매각수량(생산지정) [㎥, 톤(t)]	

매각대금	원
계약보증금	원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관(갑) 인

매 수 인(을)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주: 입목·원목 외의 경우에는 매각대상 군유임산물의 종류에 맞는 용어·단위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210㎜×297㎜(백상지 80g/㎡)

제1조(대금납입) 을은 매각대금을 소관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을의 신청에 따라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초 대금납입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되, 이 경우 을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실제 연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갑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을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임산물의 수령) 을은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을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군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솔잎혹파리 피해임지로서 피해정도가 "심"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o 생장량 대금＝1㎡당 단가×미벌채 재적×0.05×생장기간 해당 개월 수/7

* 1㎡당 단가는 매각 시 산정한 예정가격 단가와 계약 단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을이 임산물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시점으로 하며, 제1조에 따른 연체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 납입지연 일수를 제1항의 기간에서 공제한다.

제5조(미반출 임산물의 귀속) 을이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거창군 금고에 귀속된다. 다만, 을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같은 임지 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군 금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임산물 수령 후 3개월 내에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 경우. 다만, 기상 상황에 따른 장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은 갑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해제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반환) 갑은 매각대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벌채목의 표시) 골라베기 및 솎아베기의 경우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입목을 매각대상 임산물로 한다. 다만,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의 경우와 벌도목・원목・굴취수목 및 목탄 등으로 매각대상 임산물의 표시를 달리한 경우에는 임산물 인도 시에 그 표시방법을 알리기로 한다.

제10조(수라의 설치) 매각대상 임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라(修羅)는 목(木)수라 또는 플라스틱수라에 한정한다.

제11조(임도시설)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에 필요한 임도시설 등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 경우 그 공사 완료 즉시 갑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갑은 그 검사 결과 공사가 설계서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을이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제12조(반출완료 통보)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른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 ① 을은 매수한 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국유림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다음 사항을 부기함으로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림형질변경지 실측도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갈음한다.

임지 소재지	지번 (임반·소반)	공부면적 (㎡)	대부·사용허가 면적(㎡)	산지전용면적 (㎡)	기간	비고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군유림으로서 최초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군유림 외의 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다.

제14조(시설물의 철거) 매수한 임산물의 채취·가공 또는 운반을 위해 을이 국유림 안에 설치한 시설(임도시설은 제외한다)의 철거가 필요하여 갑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철거해야 한다.

주: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붙임 4]

군유임산물(입목) 매각 특수조건

1. 매각대상목 중에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여 거창군 산림과에서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매수자는 입찰 전 매각 수량·품질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에 매각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 방문 시에 주변여건 및 반출노선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품질 또는 산림의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임산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반출 완료 후 적지검사를 받기 전까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4. 현지 임산물 운반로 시설은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매수자가 설치 및 보수를 실행하여야 하며 운재로의 시설 전 거창군 산림과와 협의 후 시설하여야 하고 산원에서 일반도로 사이의 반출 구간 중에 있는 사유지를 통과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매수 계약자가 직접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매각 산물의 반출작업 시 반출노선의 노면상태에 적합한 톤수의 화물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적을 금하고, 특히 운반로 내 구간에는 대형차량(5톤 이상)이 진・출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토지 혹은 그에 인접한 시설물을 파손·손상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반출완료 후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로 및 노면정비,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6. 매각 생산재의 반출 작업으로 인하여 개인 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매수 계약자는 성실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붙임 “목재생산 사업지 안전사고예방 조치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써 작업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 확인 등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사업 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3 - 1721호

군도 2호선(주상 도평) 굴곡도로 개량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주상면 도평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군도 2호선(주상 도평)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거 창 군 수

1.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 업 명 : 군도 2호선(주상 도평) 굴곡도로 개량공사

나. 위 치 :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포장 <1공구> L=138.5m(B=9.75m), <2공구>L=127.0m(B=9.2~11.5m)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59-2번지 일원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055-940-3557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 유 자 이 외 권 리 자			비 고
				(m^2)	(m^2)	주소	성명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 계			271878	4094						
1	주상면 도평리	1133-3	도	670	3	국(건설부)					
2	주상면 도평리	1132	구	2,511	88	국(농수산부)					
3	주상면 도평리	1131	도	1,950	55	국(건설부)					
4	주상면 도평리	산78-1	임	153,421	102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63	선산김씨유도파종중				
5	주상면 도평리	산78-2	임	1,190	958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김*기				
6	주상면 도평리	59-1	도	66	66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7	신*철				
7	주상면 도평리	59-3	도	207	204	거창군					
8	주상면 도평리	59-2	답	1,191	114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52 숲속마을, 109-202	신*재				
9	주상면 도평리	산78-3	도	198	198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김*기				
10	주상면 도평리	1127-46	천	89,931	2	국(환경부)					
11	주상면 도평리	1128	구	2,274	157	국(농수산부)					
12	주상면 도평리	31-4	도	38	25	거창군					
13	주상면 도평리	31-2	도	331	331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김*익				
14	주상면 도평리	산82-1	임	11,629	399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909	밀양변씨양항리삼우파종중				
15	주상면 도평리	산82-4	도	786	601	거창군					
16	주상면 도평리	산82-3	임	198	198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909	밀양변씨양항리삼우파종중				
17	주상면 도평리	1126	도	4,787	368	국(건설부)					
18	주상면 도평리	28-2	도	92	16	거창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소 유 자 이 외 권 리 자			비 고
						주소	성명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9	주상면 도평리	산82-2	임	198	198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909	밀양변씨양항리삼우파종중				
20	주상면 도평리	8-2	도	210	11	거창군					

거창군 공고 제2023-1722호

거창군 (주)성보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거창군 (주)성보산업 토석채취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거창군 (주)성보산업 토석채취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산105-2번지 외 7필지

○ 사업시행자 : (주)성보산업

○ 사 업 기 간 : 기준년도 : 2018년, 목표연도 : 2027년

○ 사 업 면 적 : 148,502㎡(기허가지 : 58,765㎡, 추가면적 : 89,737㎡)

2. 공개개요

○ 공개기간 : 2023년 11월 27일 ~ 2023년 12월 11일(15일)

○ 공개장소 : 거창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붙임참조)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산림과(☎ 055-940-34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자료 1부. 끝.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1.1 계 획 명

- 거창군 ㈜성보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1.2 주민의견수렴 개요

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2월 10월 12일 ~ 2022년 11월 10일(22일)
- 공람장소 : 거창군(산림과), 거창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2)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2년 10월 20일(수) 14시
- 장 소 : 성보산업 내 사무실

1.3 주민의견수렴 내용

- 주 민 공 람 : 의견없음
- 주민설명회 : 의견없음

거창군 공고 제2023 - 1731호

가북 심방(3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가북면 중촌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가북 심방(3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거 창 군 수

1.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 업 명 : 가북 심방(3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나. 위 치 :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 정비 L=265.0m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 거창군 가조면 도리 281-2번지 일원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055-940-3553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 유 자 이 외 권 리 자			비 고
				(m^2)	(m^2)	주소	성명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 계			22,701	3708						
1	가북면 중촌리	541-1	도	198	179	-	거창군				
2	가북면 중촌리	2379	도	1,878	257	-	국(국토교통부)				
3	가북면 중촌리	541	답	2,625	158	경남 거창군 가조면 병산2길 **	변*경외1인				
4	가북면 중촌리	541-2	답	10	10	경남 거창군 가조면 병산2길 **	변*경외1인				
5	가북면 중촌리	543-2	답	19	19	-	거창군				
6	가북면 중촌리	543-4	답	2,278	161	박암리 **	박*호				
7	가북면 중촌리	산149-3	도	136	115	-	거창군				
8	가북면 중촌리	531-1	도	83	14	-	거창군				
9	가북면 중촌리	산149-2	임	205	156	부산 동구 초량동 **	박*범				
10	가북면 중촌리	551-2	전	409	409	경남 거창군 가북면 수재길 **	박*옥				
11	가북면 중촌리	548-1	도	1,415	975	-	거창군				
12	가북면 중촌리	551	전	630	18	경남 거창군 가북면 수재길 **	박*옥				
13	가북면 중촌리	548-4	임	4,066	192	경남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	이*영				
14	가북면 중촌리	548-2	임	2,701	497	경남 거창군 가북면 수재길 **	박*옥				
15	가북면 중촌리	547	전	2,090	391	경남 거창군 가북면 수재길 **	김*호				
16	가북면 중촌리	2378	구	3,352	125	-	국(농림수산부)				
17	가북면 중촌리	산163-6	임	294	28	경남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	김*호				
18	가북면 중촌리	443-1	도	312	4	-	거창군				